

14. 보증규정증개정규정

자료제공 : 주택사업공제조합

개정이유

최근 조합의 경영개선방안이 검토진행중에 있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합원의 추가출자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

조합 경영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증제도를 시행시까지 한시적으로 분양 보증에 한하여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
조합원이 추가출자부담없이 현행 출자범위내에서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보증규정을 개정함.

주요내용

- 가. 개별보증한도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에 한하여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함(제7조제6항)
- 나. 46배를 초과하여 분양보증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 이용분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분양보증 수수료의 1.5배를 징수토록 함. (제15조제7항)
- 다. 분양보증한도확대는 새로운 제도 확정전까지 분양보증신청서가 영업점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(부칙 제2항)

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의 경우에
는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증
할 수 있다.

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
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 이용
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

분양보증 수수료의 1.5배를 징수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관련 정관변경(안)
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분양보증한도확대의 한시적 운용) 제7
조제6항은 새로운 제도 확정전까지 영업점
접수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7조 개별보증한도 ①~⑤ (생략) <u>(신설)</u>	제7조 개별보증한도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에 불구하고 분양보증의 경우에 는 출자지분액의 46배를 초과하여 보 증할 수 있다.
제15조 보증수수료 ①~⑥ (생략) <u>(신설)</u>	제15조 보증수수료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보증 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그 추가이용 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분양보증 수수료의 1.5배를 징수한다.

주택회보